

공 고

수원시 장안구 공고 제 2013 - 177 호

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를 지정하였기 공고합니다.

2013. 05. 06.

장 안 구 청 장

1. 도로위치 : 별첨 현황도와 같음
2. 도로구간 : 시점 - 조원동 682-3번지, 종점 - 조원동 682-3번지
3. 도로길이 : 11.83 m
4. 도 로 폭 : 4.0 m
5. 도로면적 : 4.0 m² (도로후퇴폭 약 0 ~ 30cm)
6. 지정동기 :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56-15번지상의 건축물 사용승인
7. 지정근거 :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
8. 편입토지

(단위 : m²)

위 치	지 번	지 목	공부면적	편입면적	제외면적	소유자	비 고
조원동	456-15	대	132.0	1.0	-	강명규	
합 계			132.0	1.0		강명규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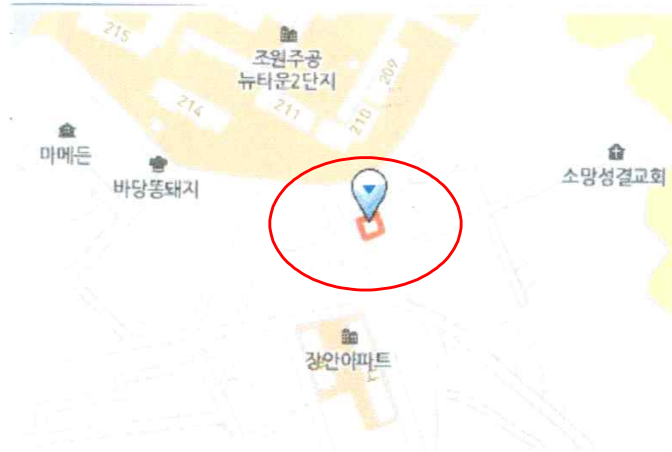
9. 기타사항

위 도로의 면적, 길이, 폭은 개략치 이므로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관련서류는 장안구청 건축과(031-228-5460)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소관 부서	장안구 건축과	담당자 직·성명	시설9급 안수진	전화 번호	228-5460
----------	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

위치도 및 현황도

•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.



위치도

축척 <임의>



현황도

축척

[] 1/600,

[] 1/1,200